

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보수·진보 모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돼 협의하며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이날 현재는 문 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수사 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는데, 이 같은 재판관 회의를 향후 매주 2회씩

대형 사건 '주무' 역할 치중... 소장대행 "속도·방향 영향 없다" 진보측 '공정성' 논쟁거리 속 보수측 '결론 수공' 가능성 관측도

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큰 사건일수록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도 "주심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대립단이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주심 지명이 원칙에 따른 무작위 배당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현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시

빗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심·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일 새로 임명한 것에 관한 논란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다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만약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내린 결론인 점에서 보수 진영 측도 승복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 사후 논란을 다소 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시작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김복형·김형두·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공수처장 “尹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 경호처 공문 예정”

“공무상 비밀 이유 영장 집행 방해 불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공수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

을 때 뿐만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공수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공수처장은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서 심리가능”

김정원 현재 사무처장 밝혀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치분 결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언제까지 (해당 가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2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군 핵심 장성들 신병 모두 확보... '정점'尹 소환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업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환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김 전 국방부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현안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 계엄 모의

긴급체포 노상원 구속영장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별도로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편제에도 없는 제2수사단을 꾸려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새로운 정황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뮌헨 회동’에 참석한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으며,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된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공공작원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 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야권에선 이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지시 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28일까지 연장... 14일부터 진술 거부 고려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일 검찰에 자진

진술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10일 뒤인 이날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